2020년 농업기술센터 자체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기　　간 : 2020. 4. 20.(월) ~ 4. 24.(금)(5일)

○ 감사범위 : 2017. 9. ~ 2020. 2.까지 처리한 업무일체

○ 감사반 편성

- 감사반장 : 기획감사관
- 감사반원 : 감사팀장 외 3명

○ 감사중점

-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 및 공직기강 확립
-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및 각종 민원 처리실태
- 출장·공가 등 복무관리 분야 및 지출 분야 적정여부
- 물품, 각종 공사 및 보조금 분야 추진 적정 여부 등

2 감사 결과

❑ 지적건수 : 13건

○ 행정 및 재정상 조치

부 서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회수)	
	계	주의	시정	개선	건	금액(원)
농업기술센터	**13**	8	4	1	2	550,000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지적내용

연번	제 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13건	주의(8) 시정(4) 개선(1)	550,000	-	
1	◎◎ ◎◎◎◎ 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 업무 소홀	주의	-	-	
2	고품질 ◆◆◆◆ ◆◆◆◆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	-	-	
3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업무 소홀	〃	-	-	
4	민원 지연처리 등 민업업무 처리 소홀	〃	-	-	
5	농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 추진소홀	개선	-	-	
6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 검토 소홀	주의	-	-	
7	증평 ◎◎◎◎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기간 연장 업무 처리 부적정	〃	-	-	
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소홀	〃	-	-	
9	병가 및 공가사용 부적정	〃	-	-	
10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70,000	-	
11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480,000	-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관리 소홀	〃	-	-	
13	행정정보 사전공표 소홀	〃	-	-	

처분요구서(1)

【제　　목】 2018년 ◎◎ ◎◎◎◎ 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사업현황

사 업 대상자	교부결정일 (보조금지급일)	사업완료일	정산보고일	사업비(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담분 (환급금포함)
◉◉◉	2018.3.22. (2018.3.27.)	2018.7.2.	2018.8.6.	26,721	17,500	9,221

【지적내용】

○ 증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버섯의 안정생산과 연중 생산판매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하고자, 군비 17,500천원, 자담 7,500, 총사업비 25,000천원을 투입하는 ◎◎ ◎◎◎◎ 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추진 상황 및 보조금 정산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하였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Ⅴ.지방보조사업의 수행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고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금액만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2018년 3월 22일 교부결정, 보조금을 2018년 3월 27일 지급한 후, 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전인 3월 12일부터 3월 22일 사이 사업을 일부 완료하고 대금을 자담분으로 시설업자에게 선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담당자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없이 정산검사 내역을 이상없음으로 보고를 하였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민간이전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년 7월 2일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사업 당시 발생된 이자를 최근에야 이자세입조치를 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시어 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2)

【제　　목】 고품질 ◈◈◈◈ ◈◈◈◈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산업시행지침서

○ 고품질 ◈◈◈◈ ◈◈◈◈ 시범사업 현황(2019년)

보조금 대상자	교부일	사 업 완료일	정 산 보고일	사업비(원)			부가가치세(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담분[1]	(계)	과세분	환급분	
계		5건		37,624,070	24,500,000	13,124,070	3,408,750	1,072,110	2,336,640	
■■■	3.15.	4.2.	4.19.	7,518,500	4,900,000	2,618,500	683,500	165,000	518,500	
▤▤▤	3.5.	3.28.	4.18.	7,518,500	4,900,000	2,618,500	683,500	165,000	518,500	
▥▥▥	3.21.	5.11.	5.17.	7,418,070	4,900,000	2,518,070	674,370	200,700	473,670	환급[2] 38,920
▦▦▦	5.17.	5.29.	6.27.	7,469,000	4,900,000	2,569,000[3]	679,000	261,210	417,790	
▧▧▧	11.6.	11.29.	20.1.3.	7,700,000	4,900,000	2,800,000[4]	688,380	280,200	408,180	

【지적내용】

○ 증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안정생산 재배기술의 보급과 재배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시키고자 2019년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군비 24,500천원, 자담 10,500천원, 총사업비 35,000천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 ◈◈◈◈ 시범 사업

---

1)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사업계획대비 자담분(10,500,000원)에 2,624,070원 자부담을 추가하여 사업 추진

2) 자부담분 부족분 55,600원에 대한 보조비율에 대한 환급금

3) 부가가치세 환급분보다 자담분 투입이 많음

4) 부가가치세 환급분보다 자담분 투입이 많음

추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5명의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정산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해당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가 명시되어 있다.

○ 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5에 따르면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 5건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비닐하우스용 필름 등 농업용 기자재 구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미리 사업계획에 반영(환급금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으로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재투자 및 정산계획을 명확히 하여 환급된 내역의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출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서의 사업집행계획·사업추진결과보고서, 업무담당자의 보조금신청 검토의견서·정산결과보고서 등 어디에도 사업내용과 사업비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명확하게 재투자된 내역을 알 수 없고 더불어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보조금교부결정 시 환급금 정산 처리에 대한 사항을 보조 조건에

기재하여 추후에 적정한 정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시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여 적정한 보조금정산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농어민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정산처리에 대하여 보조금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검토 등을 통하여 적정한 정산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3)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업무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증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연번	사업명	채용 인원	공고기간	내용	비고
1	강소농 지원모델화 사업 운영보조	1	'19.07.01 .~07.08.	- 공고문 작성 소홀 (우대사항 및 채용방법 안내) - 면접위원 위촉 기준 미비 - 동점자에 대한 합격 결정기준 미비	
2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1	'19.02.25.~03.04.	〃	
3	새기술실증포운영	2	'19.02.18.~02.22.	〃	
4	새기술실증포운영	1	'19.02.25.~03.04.	- 공고문 작성 소홀 (우대사항 및 채용방법 안내) - 동점자에 대한 합격 결정기준 미비	
5	시설하우스지역실증재배 운영	1	'19.03.18.~03.25.	〃	
6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	1	'19.03.18.~03.25.	〃	
7	농작업 대행서비스 센터 운영(사무원)	1	'19.02.25.~03.04.	〃	
8	농작업 대행서비스 센터 운영(농기계 임작업)	2	'19.02.25.~03.04.	〃	

【지적내용】

○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증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채용절차) 제2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는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1항에서 취업지원 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가점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에 취업지원 가점대상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채용절차) 제4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 우대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위와 같이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사항 누락 및 채용방법 기재를 소홀히 한 채 공고한 사실이 있음. 또한, 면접위원 위촉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홀하게 처리하였으며, 동점자 발생시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을 통해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업무연찬 등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4)

【제　　목】 민원 지연처리 등 민원업무 처리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년 1분기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결과 알림[기획감사관-6302(2019.6.24.)]

○ 민원 지연처리 현황

민원제목	민원접수일	처리기한 (a)	처리일 (b)	지연일* (c=b-a)
농약 살포로 안한 ◐◐◐, ◐◐◐ 피해	2019.10.01.	2019.10.11.	2019.10.21.	**10**
사용가능한 화분 등 원예자재 협조 요청	2019.11.27.	2019.12.05.	2019.12.18.	**13**

* 지연일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처리기간 산정과 동일 방식으로 계산함(6일 이상 민원일 경우 초일 산입,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지적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되며, 법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 방법 등)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년 1분기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결과 알림[기획감사관-6302(2019.6.24.)]호를 통하여 대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음.

○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와 같이 2019년 10월과 11월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보다 10일에서 13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5)

【제　　목】 농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 추진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농기계 구입 추진 소홀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입품목	구입액	대금 지급일	거래처	위원회 승인 여부	비 고
1	트랙터 로우더	4,400,000	2018. 04. 25.	▦▦▦▦▦▦	부	
2	동력예취기	18,197,740	2018. 05. 09.	▤▤▤▤▤▤	부	

○ 2020년 임대료 및 임작업료 공고 현황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확인경로 : 증평의 농업 > 농업기계임대사업 > 농기계보유현황 및 임대료

【지적내용】

○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임대사업을 위한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시에는「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21조(위원회의 기능) 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증평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임대료) 제2항에서 임대료 및 임작업료는 증평군 홈페이지 및 증평군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와 같이 트랙터 로우더와 동력 예취기를 구입하면서 증평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며, 임대료 및 임작업료 홈페이지 공고는 관련 정보를 얻을 수는 경로를 다양화하여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이 보다 다양하고 쉬운 방법으로 농기계 임대료 및 임작업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군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만 등록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하는 등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개선·주의

- 내 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구입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이 농기계 임대료 및 임작업료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6)

【제　　목】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 검토 소홀

【현　　황】

○ 수목 전정 내역서 검토 현황

(단위 : 원)

공정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증▲감
			당초	검토	당초	검토	
합 계					17,067,063	3,409,220	▲13,657,843
소나무 전정	R=41미만	69주	196,094	35,551	13,530,491	2,452,989	▲11,077,502
반송(소나무)전정	H1.5W2.0	18주	128,818	12,543	2,318,722	225,783	▲2,092,939
느티나무 전정	R=50미만	5주	99,576	67,379	497,879	336,896	▲160,983
단풍나무 전정	R=15미만	12주	25,250	15,320	303,005	183,843	▲119,162
스트로브잣나무	R=15미만	10주	18,971	7,183	189,713	71,827	▲117,886
활엽수종 전정	R=16미만	9주	25,250	15,320	227,253	137,882	▲89,371

※ 건설공사표준품셈 제4장 조경공사 기준 적용(세부내역 붙임 참조)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서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1.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3.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1” 부터 “3” 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으로 결정한다.

○ 같은 기분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에서는 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으로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2018년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내 나무수형조절(전지)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상대자와의 도급계약(◍◍◍◍)을 위해 예정가격 및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위 현황과 같이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으나,

○ 견적서 공정 중 수목 전정의 일위대가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건설공사 표준품셈』제4장 조경공사 4-5-1, 일반전정, 4-5-2 가로수 전정, 4-5-3 관목 전정 등을 적용한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원가계산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위 현황과 같이 13,657천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7)

【제　　목】 증평 ◎◎◎◎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기간 연장 업무 처리 부적정

【현　　황】

○ 용 역 명 : 증평 ◎◎◎◎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 사 업 량 : 문화재 시굴조사 1식(25,462㎡)

○ 기　　간

- 당 초 : 2018. 10. 23. ~ 12. 1.

- 변 경 : 2018. 10. 23. ~ 12. 28.

○ 공기연장 사유 : 문화재청 사전협의 지연 및 벌목(27일 연장)

○ 검토결과 : 27일 공기연장에 대한 검토내용 없이 승인

○ 용역금액 : 총80,440천원

○ 용 역 사 : ■■■■■■■■■■■■■■

○ 공 정 율 : 100%

【지적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1-다” 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라”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2018. 10. 17. 계약하고 2018. 12. 27. 준공한 증평◎◎◎◎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건의 실정보고가 2018. 11. 29. 도급시행사(■■■■■■■■■■■■■■)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본 보고 내용에는 문화재청 협의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 이외 공기연장 일수 27일에 대한 산정근거 등 예정공정표와 실행공정 비교 등 객관적인 공기연장 일수 산정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음에도

○ 발주처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승인을 함에 있어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27일을 승인하였으며 공기연장 일수에 대한 명확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음. 특히 실정보고일 2018. 11. 30.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대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과업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용역일시정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8)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소홀

【현　　황】

○ 계 약 명 : 노후 농기계 대체 장비 구입

○ 계약금액 : 금17,968,500원

○ 물 품 명 : 쟁기 1대, 쇄토기 2대

○ 납 품 일 : 2018. 4. 20.

○ 계약상대자 : ◒◒◒◒◒◒◒◒

○ 계약방법 : 수의1인 견적

○ 직접생산확인 여부 : 부

【지적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6]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7]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5호)에서는 별표1에 따라 경쟁제품별 분류로 농기계,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토지관리농기계 제품으로 쟁기, 쇄토기, 정지기를 직접생산확인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2018. 3. 22. 계약하고 2018. 4. 20. 납품완료 한 노후농기계 대체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은 계약 또는 납품 완료 시 쟁기와 쇄토기의 직접생산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문서 및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발주처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확인 및 검토 없이 계약 및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9)

【제　　목】 병가 및 공가 사용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증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증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증평군 ↔ 증평군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 병가 및 공가 부적정 사용현황

소속	직급	성명	구분	병가(공가)사용일수	병가(공가)사유	진단서 미첨부 병가사용일수
농　업 기술센터	공무직	◍◍◍	병가	7일 7시간 (2017.8.31.~2017.9.26.)	병원입원 및 병원진료	7시간
농　업 기술센터	공무직	▩▩▩	병가	20일 (2019.3.28.~2019.11.29.)	교통사고 및 신병치료	4일
농　업 기술센터	공무직	▤▤▤	공가	1일 (2018.12.26.)	부모 참관수업	-

【지적내용】

○「증평군 ↔ 증평군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제50조(공가) 및 제51조(병가)에 따르면, 병역법 등에 의한 훈련 및 소집,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조합원(공무직근로자)에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할 경우 60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증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증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르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가사용의 누적일수가 7일이 경과한 2명의 직원에 대하여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병가 신청을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부모 참관수업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1명에 대하여는 자녀돌봄휴가 또는 연가로 처리해야 함에도, 공가로 부적정하게 허가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직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대상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10)

【제　　목】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공무원 여비규정」

○ 관내 출장여비 과오지급 현황

연번	일 자	출장지 (출장시간)	출장자	지급여비(A)	지급 가능액(B)	회수대상액 (C=A-B)	감액사유
	합계	7건				70,000	
1	2019-04-01	관내 (09:10~15:00)	▣▣▣	20,000	10,000	**10,000**	공용차량 이용
2	2020-01-29	관내 (13:06~15:20)	▤▤▤	20,000	10,000	**10,000**	4시간 미만 (2시간 14분)
3	2020-01-03	관내 (10:00~14:00)	▥▥▥	20,000	10,000	**10,000**	4시간 미만 (출장시간 내 결재내역*)
4	2020-01-21	관내 (12:50~17:50)	▦▦▦	20,000	10,000	**10,000**	
5	2020-01-22	관내 (10:09~16:03)	▧▧▧	20,000	10,000	**10,000**	
6	2020-02-07	관내 (13:04~17:20)	▨▨▨	20,000	10,000	**10,000**	
7	2020-02-27	관내 (13:25~19:46)	▩▩▩	20,000	10,000	**10,000**	

【지적내용】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제3조에서는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하며 그 밖에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비 등 국내출장 여비 지급기준을 보면,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업무추진 관련하여 관내 출장시 4시간 미만 출장 또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 1만원을 감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5명의 직원에게 7건에 걸쳐 각 2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를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시 정

- 내 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오지급된 여비를 회수하시기 바라며, 관련공무원을 포함한 전직원 대상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의 교육을 통해 출장여비를 과오지급 또는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장보고 및 여비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회 수(70,000원)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11)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증평군 ↔ 증평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

○가족수당 지급현황

소속	직급	성명	부양가족변동사항 (변동일)	가족수당 부당지급 내역		비고
				지급기간	지급액	
농　업 기술센터	공무직	◍◍◍	시모 ▥▥▥ 사망 (2017.10.)	2017.11.~ 2019.10. (24개월)	480,000	가족수당 20,000원

【지적내용】

○「증평군 ↔ 증평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제8조에 따르면 공무직 조합원의 가족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며,

○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변동)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1명은 2017. 10월 부양가족 중 배우자의 모가 사망하여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2018. 1월에서야 소속기관에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였고, 농업기술센터 회계담당 역시 2018. 1월 부양가족(변동)신고서를 징구하였음에도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제외없이 2019. 10월까지 24개월간 480,000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시 정

- 내 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당지급된 가족수당 480,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회 수(480,000원)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12)

【제　　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관리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표1>

구 분	성 명	인사발령일	지정일	서약서 제출	비고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2020. 02. 15.	2020. 04. 20.	미제출	
업무보조자	◍◍◍	2019. 01. 01.	2020. 04. 20.	제　출	2019.5.2.

○ <표2>

업무처리 담당자	이용사무명	이용 행정정보	권한 등록기간	현 담당업무	비고
▩▩▩	수당 중복지급방지 확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2016.07.11.~ 현재	생활원예 업무 총괄	2020.1.1. 인사발령

【지적내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제20조에서는 분임공동이용관리자의 지정·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정보 접근권한을 승인·부여받은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업무보조자, 업무처리 담당자등은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이 이용기관의 인사발령,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용기관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또한, 제24조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스템 접근,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법령,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의해 허용된 사람에

한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하고, 접근권한의 등록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및 업무보조자, 업무처리담당자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약서(전자문서 포함)를 공동이용관리자등(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표1>과 같이 2019. 1. 1일자 인사발령으로 업무보조자의 변경, 2020. 2. 15일자 인사발령으로 분임공동이용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등록했어야 함에도 2개월 내지 1년이 지난 후에야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및 업무보조자로 변경지정·등록하였고, 등록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를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 <표2>와 같이 수당 지급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계담당자(업무처리담당자)에게 부여했던 수당 중복지급 방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접근권한을 2020. 1. 1.일자 인사발령으로 해당 직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시 정

- 내 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기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시어 향후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13)

【제　　목】 행정정보 사전공표 업무 소홀

【현　　황】

○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증평군 정보공개 조례」

○ <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정보 사전공표 현황

연번	공표항목	공개시기	최근 공표일	비 고
1	원예작물 지도사업 안내	매년 1월	2017. 01. 03.	
2	환경농업 지도사업 안내	매년 1월	2017. 01. 03.	
3	지적재산권 이용 현황	매년 12월	2015. 10. 26.	
4	생명작물 지도사업 안내	매년 1월	2017. 01. 03.	
5	농업용 미생물 공급안내	매년 4월	2017. 04. 03.	
6	미생물배양 보급현황	매년 1월	2018. 01. 04.	
7	농어촌 생활기술교육 프로그램 안내	매년 4월	2018. 05. 24.	
8	농작업환경개선사업 안내	매년 12월	2017. 07. 21.	
9	향토음식교육 프로그램 안내	매년 4월	2017. 03. 09.	

【지적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증평군 정보공개 조례」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예작물 지도사업 안내’외 17건의 사전정보 공표 항목을 정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이후에도 각 사업담당자는 공개주기에 따라 공표내용 등을 현행화하여 군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했다.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사전공표 대상 9건에 대하여 2015년 내지 2018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공개주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전정보공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상 처분 : 시 정

- 내 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군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표항목, 공표내용 및 담당부서 등을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정보공개 방식을 강구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